

제2조 채권 추심·변제총당

채권자가 제1조에 의하여 양수한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

양도인은 공사의 부실·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불가항력·사변·재해·수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,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

제4조 특약사항

채권양도인 : (인)

--	--

※ 채권양도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
(기재예시 : 1. 수령함, 2. 들었음)

1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?	성명 :	(인)
2.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?	성명 :	(인)
상 답 자	직 위 :	성 명 : (인)

양도채권의 표시

1. 원 인 계 약	년	월	일자	계약
2. 채 권 총 액	금	원		
3. 지 급 기 일	년	월	일	
4. 채 무 자				
5. 특 기 사 항				

양도채권의 표시

1. 원 인 계 약	년	월	일자	계약
2. 채 권 총 액	금	원		
3. 지 급 기 일	년	월	일	
4. 채 무 자				
5. 특 기 사 항				

양도채권의 표시

1. 원 인 계 약	년	월	일자	계약
2. 채 권 총 액	금	원		
3. 지 급 기 일	년	월	일	
4. 채 무 자				
5. 특 기 사 항				

주의 : 특기사항란에는 지급조건과 원인계약이 납품계약일 때의 품명·수량·단가 등을 적습니다.

채권양도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

채권양도란

-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.
- 따라서 자기소유의 채권을 타인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,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.

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

- 「**특정채무담보**」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, 그 채무가 연기·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- 「**근담보**」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,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「특정 근담보」

특정된 거래계약(예 :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)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,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.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
「한정 근담보」

특정한 종류의 거래(예 : 당좌대출거래)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,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.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
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

- 채권양도인이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, 은행은 양도된 채권 외에 채권양도인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